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290
----------	-------

발의연월일 : 2026. 6. 16.

발 의 자 : 이기현 · 김남근 · 박지원  
이재관 · 권향엽 · 박해철  
한정애 · 이용우 · 임미애  
허성무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23년부터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및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을 허용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물납 가능 범위가 해당 문화유산 등의 가액에 상당하는 세액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 이로 인해 문화유산 등 외에 고액의 상속세가 발생할 경우, 상속인은 나머지 세액을 충당하기 위해 문화유산 등을 해외에 급매하는 상황에 노출될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신청 가능 세액의 한도를 '해당 문화유산 등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과 '전체 상속세 납부세액의 30%' 중 큰 금액으로 확대하여, 상속인이 보유한 문화유산 등의 가치가 전체 상속세액에 대비해 낮더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물납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줌으로써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아울러 우수한 문화유산이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국립박물관·미술

관 등의 소장품을 확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국가적 문화 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2제5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2제5항 중 “상속재산 중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문화유산 등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상속재산 중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문화유산 등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
2. 상속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30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물납을 신청하여 그 허가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3조의2(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① ~ ④ (생략)</p> <p>⑤ 제1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u>상속재산 중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문화유산 등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u>을 초과할 수 없다.</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⑥ (생략)</p>	<p>제73조의2(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u>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u>----- -----.</p> <p>1. <u>상속재산 중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문화유산 등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u></p> <p>2. <u>상속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30</u></p> <p>⑥ (현행과 같음)</p>